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3061
----------	------

2025년 9월 1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5년 8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2025년 8월 14일
- 다. 상정일자: 제332회 임시회 서울특별시의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25년 9월 1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 설명자: 기후환경본부 권민 본부장)

- 가. 제안이유
- 서울시는 녹색산업 육성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녹색기업 창업펀드 및 기후테크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 중임.
 -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녹색산업 및 기후테크 관련 벤처·창업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 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1) 추진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2) 출자 개요

- 출자 규모: 총 19억원(2026년)

펀드명	'26년 市출자액 (총약정액)	조성액	조성기간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6호(기존)	4(20)억원	440억원	'24년~'32년
기후테크 펀드 제2호(신규)	15(15)억원	20억원 이상	'26년~'34년

3) 필요성

-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녹색산업 분야 벤처·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안 필요.
-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새로운 기술 적용 없이는 탄소중립 실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기술 보유기업 육성 필요.
- 기후테크 산업의 투자·회수의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초기 민간 투자가 미흡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집중적인 지원 및 관리 필요.

4) 출자계획

[녹색기업 창업펀드]

- 추진 방향
 - 정부 정책펀드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 펀드 운용
 - 녹색기술 보유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기업 성장지원
- 펀드명: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6호(기존)
- 출자금액: 총 4억원('26년)
- 조성규모: 440억원
 - ▶ 서울시(20억원), 모태펀드(292.5억원), 민간출자자 등(127.5억원)

- 조성형태: 벤처투자조합
- 투자대상: 서울 소재 녹색분야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
 - ▶ 서울 소재 녹색기업(창업기업·벤처기업): 서울시 출자금의 400% 이상
 - ▶ 초기 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 서울시 출자금의 50% 이상
- 운용기간: 8년 이상 장기투자(투자 4년, 회수 4년)

[기후테크 펀드]

- 추진 방향
 - 기후테크 혁신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서울시 주도 펀드 운영
 - 기후테크 기업 투자 집중 및 초기기업 성장지원 육성 프로그램 도입
- 펀드명: 기후테크 펀드 제2호(신규)
- 출자금액: 총 15억원('26년)
- 조성규모: 20억원
 - ▶ 서울시(15억원), 민간출자자(5억원 이상) 등
- 조성형태: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투자대상: 서울 소재 녹색분야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
 - ▶ 서울 소재 기후테크 기업 중 창업 3년 이내 또는 연매출 20억 원 이하 기업에 펀드 약정총액의 70% 이상
- 운용기간: 8년 이상 장기투자(투자 4년, 회수 4년)

<펀드 조성현황>

(’25. 7월 말 기준)

펀드명	재원	조성액 (市출자액)	조성일	존속기간	비고
녹색기업 창업펀드 1호	SBA 출연금	160억원 (SBA 20억원)	’11.5.30.	7년 (4년투자, 3년회수)	청산완료
녹색기업 창업펀드 2호	SBA 출연금	100억원 (SBA 20억원)	’12.7.12.	8년 (4년투자, 4년회수)	청산완료
녹색기업 창업펀드 3호	市 중소기업육성기금	200억원 (市 20억원)	’13.9.16.	12년 (3년투자, 9년회수)	청산중 (~’25.9.15.)
녹색기업 창업펀드 4호	SBA 기금	145억원 (SBA 10억원)	’17.9.5.	8년 (4년투자, 4년회수)	회수중
녹색기업 창업펀드 5호	市 중소기업육성기금	200억원 (市 20억원)	’23.12.1.	8년 (4년투자, 4년회수)	투자중
녹색기업 창업펀드 6호	市 기후대응기금	440억원 (市 20억원)	’24.8.27.	8년 (4년투자, 4년회수)	투자중
기후테크 펀드 1호	市 기후대응기금	15억원 이상 (市 10억원)	결성 준비중(운용사 선정 ’25.5)		
총 계		1,245억원(市·SBA 110억원) ※ 결성예정 불포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재정법」,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 나. 예산조치: 2026년도 기금 예산 반영

4. 검토보고 요지

가. 개요

- 본 동의안은 기후대응기금 19억원을 녹색기업 창업펀드(이하 “녹색펀드”) 제6호(기존, 4억원)와 기후테크 펀드(이하 “기후펀드”) 제2호(신규, 15억원)에 출자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¹⁾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 출자동의안 개요 >

펀드명	'26년 市출자액 (총약정액)	조성액	조성기간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6호(기존)	4(20)억원	440억원	'24년~'32년
기후테크 펀드 제2호(신규)	15(15)억원	20억원 이상	'26년~'34년

나. 검토의견

1) 펀드 조성 현황

- 녹색펀드는 금융권 대출이자 및 원금상환에 부담이 있는 서울 소재 관련 창업 기업 중에서 담보 능력은 부족하나 성장 가능성이 크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2011년²⁾부터 서울시, 중소기업청, 민간 투자자 등의 출자로 구성되어 서울산업진흥원(이하 “SBA”) 내 투자지원팀에서 관리·운용하고 있음.

녹색펀드는 1호부터 6호까지 총 1,245억원 규모로 구성되어 현재 1·2호는 청산 완료, 3호는 청산 중³⁾, 4호는 회수 중에 있고 5호와 6호는 투자 중에 있으며, 투자가 진행 중인 금액을 제외한 시 투자금은 70억원으로 이 중 96억원이 회수되어 회수율은 약 137% 수준임.

1)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2) 서울시 녹색산업 육성계획(행정1부시장 방침-제10176호, '11.9.9.)

3) 당초 존속 기한이 2021년 9월까지이나 해산총회에서 청산 기한을 3년 연장('24.9.15.)하였고, 임시 조합원 총회('24.9.13.)에서 청산 기한을 1년 연장('25.9.15.)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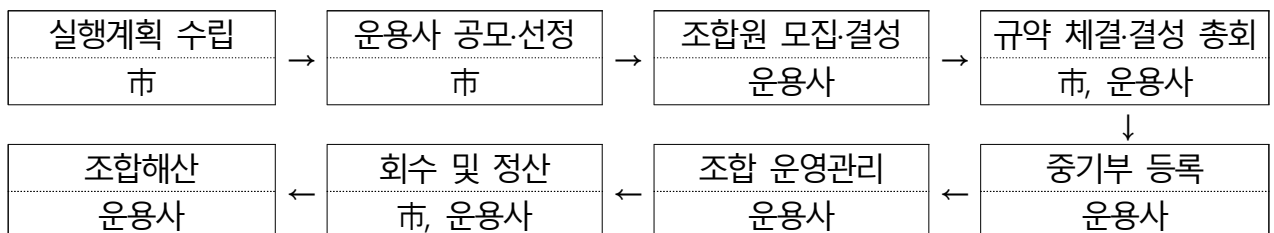
<녹색기업 창업펀드, 기후테크 펀드 운영 현황('25.7월 기준)>

(단위: 억원)

펀드명	조성액	조성일	운용 기간	총 투자액	총 회수액	市 투자 회수		투자기업수 및 투자액		
						출자	회수	계	녹색기업	IT/기타
녹색1호	160 (SBA 20)	'11.5.30. (청산완료)	7년	138.7	196.3	20	24.72	17개사	5	12
								138.7	40	98.7
녹색2호	100 (SBA 20)	'12.7.12. (청산완료)	8년	96.4	205.7	20	37	20개사	4	16
								96.4	20.5	75.9
녹색3호	200 (市 20)	'13.9.16. (청산중)	12년	207.1	276.4	20	24.78	21개사	3	18
								207.1	45	162.1
녹색4호	145 (SBA 10)	'17.9.5. (회수중)	8년	127.5	133	10	9.25	19개사	4	15
								127.5	22.5	105
녹색5호	200 (市 20)	'23.12.1. (투자중)	8년	34	-	20	-	6개사	0	6
								34	0	34
녹색6호	440 (市 20)	'24.8.27. (투자중)	8년	40	-	20	-	1개사	1	0
								40	40	0
기후1호	15 (市 10)	결성 준비중(운용사 선정 '25.5)								
계	1260 (市SBA120)	-		643.7	811.29	110	95.75	84개사	17	67
								643.7	168	475.7

- 기후테크 펀드 제1호는 2025년에 15억원(서울시 출연금 10억원) 규모로 조성하여 현재 운용사를 선정('25.5.)하였고 조합원 모집과 결성을 준비하고 있음.

<펀드 조성 및 운용 절차>



2) 출자 동의안의 타당성 검토

- 녹색펀드 제6호(4억원)와 기후펀드 제2호(15억원) 조성 자금(총 19억원) 출자를 위해 기후대응기금을 활용하려는 것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것으로 이견 없음.

이 중 녹색펀드(제6호)는 당초 총 20억원을 2년('24년 12억원, '25년 8억원)에 걸쳐 출자('23년 출자동의안 가결)할 계획이었으나, 일정 지연으로 인해 실제 출자액은 16억원에 그쳐 미출자액 4억원에 대해 출자 동의를 받는 것임.

일정 지연의 사유로 인해 계획된 출자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미출자액에 대하여 다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더불어 당해연도 정책목표 달성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계획 수립에 신중을 기하고 운용사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펀드 운용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며, 적극적인 투자 대상 발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또한, 기후펀드는 당초 모태펀드와 연계한 운용 방식에서 서울시 주도 펀드로 전환하고 조성액 규모를 큰 폭으로 축소할 만큼 서울시의 역할 확대 방안 마련과 함께 성과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기후테크 기업 위주의 실효성 있는 투자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한편, 2호 펀드는 1호(市 출자 10억원, 조성액 15억원) 펀드에 비해 서울시 출자액 및 조성액 규모를 5억원 증액하였는데 이는 이전 녹색펀드에 비해 조성액 규모가 큰 폭으로 축소되어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조성액 규모를 늘릴 필요성이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어 이견 없으며, 이후 적정 펀드 조성액 규모에 대해서는 앞서 조성된 펀드 운영 성과를 토대로 검토되어야 할 것임.

4) 기존 녹색펀드의 경우 현재까지 투자했거나 투자 중인 84개사 중 녹색기업은 17개사에 지나지 않고 있으며, 기후펀드의 경우 서울 소재 기후테크 기업 중 창업 3년 이내 또는 연매출 20억 원 이하 기업에 펀드 약정총액의 70% 이상 투자할 계획.

5.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6. 토론요지: 없음

7. 심사결과: 원안 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기후대응기금 출자 동의안

의안 번호	3061
----------	------

제출년월일 : 2025년 8월 11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는 녹색산업 육성 및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녹색기업 창업펀드 및 기후테크 펀드를 조성하여 운영중임
- 나. 녹색산업 및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기후테크 관련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운영하고자 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전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추진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나. 출자개요

- 출자규모 : 총 19억원('26년)

(단위 : 억원)

펀드명	'26년 市출자액 (총약정액)	조성액	조성기간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6호(기존)	4(20)	440억원	'24년~'32년
기후테크 펀드 제2호(신규)	15(15)	20억원 이상	'26년~'34년

※ '26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정 및 운용사 출자금 납입 요청에 따라 금액 변동될 수 있음

다. 필 요 성

- 2050 탄소중립 달성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녹색산업 분야 벤처·창업기업의 생존율을 높이는 방안 필요
- 지속적인 온실가스 배출로 새로운 기술 적용 없이는 탄소중립 실현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혁신기술 보유 기업 육성 필요
- 기후테크 산업의 투자·회수의 불확실성 등의 사유로 초기 민간 투자가 미흡함에 따라 공공부문의 집중적인 지원 및 관리 필요

3. 출자계획

가. 녹색기업 창업펀드

- 추진방향
 - 정부 정책펀드와 민간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 펀드 운용
 - 녹색기술 보유 벤처·창업기업을 육성하여 글로벌기업 성장지원
- 펀 드 명 : 녹색기업 창업펀드 제6호(기존)
- 출자금액 : 총 4억원('26년)
- 조성규모 : 440억원
 - 서울시(20억원), 모태펀드(292.5억원), 민간출자자 등(127.5억원)
- 조성형태 : 벤처투자조합
- 투자대상 : 서울 소재 녹색분야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
 - 서울 소재 녹색기업(창업기업·벤처기업): 서울시 출자금의 400% 이상
 - 초기 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 서울시 출자금의 50% 이상
- 운용기간 : 8년 이상 장기투자 (투자 4년, 회수 4년)

나. 기후테크 펀드

○ 추진방향

- 기후테크 혁신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서울시 주도 펀드 운영
- 기후테크 기업 투자 집중 및 초기기업 성장지원 육성 프로그램 도입

○ 펀드명 : 기후테크 펀드 제2호(신규)

○ 출자금액 : 총 15억원('26년)

○ 조성목표 : 20억원 이상

- 서울시(15억원), 민간출자자(5억원 이상) 등

○ 조성형태 :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투자대상 : 서울 소재 기후테크 분야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

- 서울 소재 기후테크 기업 중 창업 3년 이내 또는 연매출 20억 원 이하 기업에 펀드 약정총액의 70% 이상

○ 운용기간 : 8년 이상 장기투자 (투자 4년, 회수 4년)

【펀드 조성현황】

(’25.7월 말 기준)

펀드명	재원	조성액 (市출자액)	조성일	존속기간	비고
녹색기업 창업펀드 1호	SBA 출연금	160억원 (SBA 20억원)	’11.5.30.	7년 (4년투자, 3년회수)	청산완료
녹색기업 창업펀드 2호	SBA 출연금	100억원 (SBA 20억원)	’12.7.12.	8년 (4년투자, 4년회수)	청산완료
녹색기업 창업펀드 3호	市 중소기업육성기금	200억원 (市 20억원)	’13.9.16.	12년 (3년투자, 9년회수)	청산중 (~25.9.15.)
녹색기업 창업펀드 4호	SBA 기금	145억원 (SBA 10억원)	’17.9.5.	8년 (4년투자, 4년회수)	회수중
녹색기업 창업펀드 5호	市 중소기업육성기금	200억원 (市 20억원)	’23.12.1.	8년 (4년투자, 4년회수)	투자중
녹색기업 창업펀드 6호	市 기후대응기금	440억원 (市 20억원)	’24.8.27.	8년 (4년투자, 4년회수)	투자중
기후테크 펀드 1호	市 기후대응기금	15억원 이상 (市 10억원)	결성 준비중(운용사 선정 ’25.5)		
총 계		1,245억원(市·SBA 110억원) ※ 결성예정 불포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②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는 같은 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범위에서 벤처투자를 하거나 벤처투자조합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제1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59조

제59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거나 보증조건 등을 우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법인세·취득세·재산세·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에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매년 녹색기술·녹색산업 관련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의 고충을 조사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계 기관에 대하여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고충조사,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3조

제23조(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한 지원·특례 등) ①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지급, 실증사업에 대한 실증장소 및 재정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소득세·취득세·재산세·등록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녹색기술·녹색산업과 관련된 기업이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할 때 이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의 업무를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나. 예산조치 : 2026년도 기금 예산 반영

※ 작성자 : 기후환경본부 기후환경정책과 김경희 (☎ 2133-3586)